

[변경 대비표]

가. 대상 펀드 :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변경전: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나. 변경 시행일 : 2018년 7월 12일

다. 주요 변경 내용 :

- 투자신탁 명칭 변경
- 투자신탁의 전환 구조 삭제
-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전	정정후
투자신탁 명칭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 투자신탁 1호(주식)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제2조(용어의 정의)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9. 생략</p> <p>10. "전환형"이라 함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p> <p>11. 생략</p>	<p>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9. 현행과 같음</p> <p>10. 삭제</p> <p>11. 현행과 같음</p>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p>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호(주식)'이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6. 생략</p> <p>7. 전환형</p> <p>③~④생략</p>	<p>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이라 한다.</p> <p>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p> <p>1.~ 6. 현행과 같음</p> <p>7. 삭제</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이 투자신탁은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이하에서 “교보약사 파워 전환형 투자신탁”이라 한다.) 내에서 하나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이하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u>다만,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u></p>	<p>⑤ 삭제</p>
<p>제 3 조의 3(투자신탁의 전환)</p>	<p>내용 생략</p>	<p>삭제</p>
<p>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① 생략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④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p>
<p>제 39 조(보수)</p>	<p>①생략 ②투자신탁 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3. 생략 4.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전환 ③ 생략</p>	<p>①현행과 같음 ②투자신탁 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 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3. 생략 4. 삭제 ③ 현행과 같음</p>

[투자설명서]

- 구분	정정전	정정후
제1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교보약사 파워브릭스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제1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표시 : 전환형 (복수의 투자신탁 간에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을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라.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삭제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금액 지급 ② 오후 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금액 지급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5시(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 에 환매금액 지급 ② 오후 5시(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 에 환매금액 지급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이 투자신탁의 전환 청구를 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 아래 내용 생략 -	다. 전환 삭제

[간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 법 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 [교보약사 파워 전환형 투자신탁] 교보약사 파워 브라질/러시아/인디아/차이나/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삭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 방법	• 17시 이전 : 4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대금 지급 • 17시 경과후 : 5영업일 기준가 10영업일 대금 지급	• 17시 이전 : 4영업일 기준가 8영업일 대금 지급 • 17시 경과후 : 5영업일 기준가 9영업일 대금 지급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의 전환 청구를 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 아래 내용 생략 -	삭제